
 관계부처공동		<h1>보도자료</h1>	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	
보도일시	배포즉시보도	20-580		
담당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	과장 박경진(02-2100-7678)		
	법무부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	반장 김용규(02-2110-4088)		
	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	과장 정상용(044-203-5677)		
	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과	과장 양승욱(042-481-6816)		
	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	과장 김상용(044-202-7494)		
문의	「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」 (1566-8110, www.btsc.or.kr) 「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」 (1577-9997, www.worldjob.or.kr) 「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」 (02-739-7400, www.kr.emb-japan.go.jp/itprtop_ko/index.html)			

‘한·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’ 10.8.(목)부터 시행

□ 한일 양국은 ‘한·일 기업인(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) 특별입국절차’*에 합의하여 10.8.(목)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.

* (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) ‘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’에 따른 ‘비즈니스 트랙’ 및 ‘레지던스 트랙’

- ‘비즈니스 트랙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,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
- ‘레지던스 트랙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,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

□ 지난 9.24.(목) 한·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 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,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.

□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*이 ‘비즈니스 트랙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, 한·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

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* ('비즈니스 트랙'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) ▲단기 출장자(단기상용) ▲장기 체류자격 대상자(① 경영·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(회사 설립 한정)) 및 ▲외교·공무

※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·지역(한국 포함 159개)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'특단의 사정'이 없는 한 입국금지(한국은 4.3.~)를 견지하고 있는데,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'특단의 사정'에 포함

※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(상세 별첨)

출국 전	①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(체온 측정 등)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(별도 양식(참고3)) 수령 ③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(여행자 보험 등) 가입
일본 입국 후	①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② 접촉확인 앱 설치 /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③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-근무처 왕복 한정(전용차량)

□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,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·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'19.12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,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며,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대상국,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

※ 이번 합의를 통해, 우리나라는 중국(5.1.~), UAE(8.5.~), 인도네시아(8.17.~), 싱가포르(9.4.~)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, 일본은 싱가포르(9.18.~)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'비즈니스 트랙' 시행

□ ▲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'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' (1566-8110, www.btsc.or.kr), ▲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'한국산업인력공단' (1577-9997, www.worldjob.or.kr), ▲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(02-739-7400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- 붙임 1.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
2.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 등 관련 Q&A
3. 일본 입국자 대상 ‘코로나19 음성확인서’ 서식
4.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(10.5 기준 총 96개소). 끝.

참고1

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

	비즈니스 트랙	레지던스 트랙
적용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- (단기) 단기상용 - (장기)* ①경영·관리 ②기업 내 전근(주재원) ③고도전문직 ④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(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)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(회사설립 한정) - 외교·공무 * 주로 단기출장자를 상정 / 장기 체류 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용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인 및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 - (단기) 단기상용 - (장기) 모든 비자 해당 ※ 재입국자는 기존 일본의 재입국 절차 이용 가능
주한일본 대사관 등에 비자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약서 사본 제출(日 초청기업 작성) ○ <u>일본 내 활동계획서 사본 제출</u>(日 초청기업 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약서 사본 제출(日 초청기업 작성)
출국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(체온 측정) ○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 19 검사 (별도 양식) ○ 민간의료보험(여행자 보험 등) 가입* * 일본 내 공적보험(건강보험 또는 국민 건강보험) 가입자는 불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국 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(체온 측정) ○ 출국 72시간 전 코로나 19 검사 (별도 양식) ○ 민간의료보험(여행자 보험 등) 가입* * 일본 내 공적보험(건강보험 또는 국민 건강보험) 가입자는 불요
입국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○ 질문표(건강상태 등) / 서약서·<u>일본 내 활동계획서</u> 제출 ○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○ 접촉확인 앱 등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○ 질문표(건강상태 등) / 서약서 제출 ○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○ 접촉확인 앱 등 설치
입국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○ <u>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-근무처 왕복 한정</u> ○ 14일간 건강모니터링(LINE앱*) * 일본 내 개통 휴대전화(일본 SIM카드)한정 설치 가능 / 일본 초청 기업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○ 14일간 위치정보 저장(구글 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4일간 대중교통 사용불가 ○ 14일간 자택 등 대기 ○ 14일간 건강모니터링(LINE앱*) * 일본 내 개통 휴대전화(일본 SIM카드)한정 설치 가능 / 일본 초청 기업단체의 담당자가 대리 보고 가능 ○ 14일간 위치정보 저장(구글 앱)

1.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?

- 한·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10.8(목)부터 시행되며, 시행일부터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한·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(「비즈니스 트랙」 등) 적용 대상에 대한 비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임.
-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, 기존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카드*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이 한국을 방문한 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한·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상 「비즈니스 트랙」 적용이 가능함.
- 일본 초청기업의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한·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면,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해 짐.

* 단, 아래 체류 자격에 해당해야 함.

- ①경영·관리 ②기업 내 전근(주재원) ③고도전문직 ④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(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등) ⑤간호 ⑥특정기능 ⑦기능실습 ⑧특정활동(회사 설립 한정)

※ 일본 재입국자가 「비즈니스 트랙」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재입국 절차 이용 가능

2. 「비즈니스 트랙」은 단기 출장자만 이용 가능한지?

- 한·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인 경우, 일본 입국시 단기 출장자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자격 대상도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「비즈니스 트랙」 이용이 가능함.

- 다만, 「비즈니스 트랙」 이용을 위해서는 비자 등 신청 단계에서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▲서약서 및 ▲일본 내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「비자」 또는 「재입국관련서류 제출확인서」를 발급받아야 함.

3. 일본 입국시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?

- 일본에 입국하는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을 반영한 별첨 양식(참고3)을 사용하여, 출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.
 - ※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(일문/영문 병기)도 사용 가능
- 국내 기업인의 경우,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(1566-8110, www.btsc.or.kr)에 문의 가능(신청시 기업 공문 필요)
- 개인 신청자의 경우,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(10.5 기준 96개소)에 문의 가능
 -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「한국산업인력공단」(1577-9997, www.worldjob.or.kr)을 통해서도 가능
- ※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

참고3

일본 입국자 대상 「코로나19 음성확인서」 서식

※ 일본측은 현재 우리 검체채취 방식 중 비인두도말물 방식(Nasopharyngeal Swab)만 인정(비구인두 혼합의 경우 아래 양식에서 비인두도말물에 체크)

Certificate of Testing for COVID-19

Date of issue_____

Name Kildong HONG , Passport No. _____ ,

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, Date of Birth _____ , Gender Male/Female ,

This is to certify the following results which have been confirmed by testing for COVID-19 conducted with the sample taken from the above-mentioned person.

검체채취 Sample (Check one of the boxes below)	검사법 Testing for COVID-19 (Check one of the boxes below)	검사결과 Result	①결과 판정일 Result Date ②검체채취일자 및 시간 Sampling Date and Time	비고 Remarks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인두도말물 Nasopharyngeal Swab <input type="checkbox"/> 타액 Saliva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핵산증폭검사 (real time RT-PCR법)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(real time RT-PCR) <input type="checkbox"/> 핵산증폭검사 (LAMP법)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(LAMP) <input type="checkbox"/> 항원검사 antigen test (CLEIA)	Negative	① 30 th May 2020 ② 29 th May 2020 1 PM KST(Korea Standard Time)	

Medical institution 병원 영문 명칭

Address of the institution 병원 영문 주소

Signature by doctor 의사 영문 성명 및 서명

직인

참고4

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(10.5기준 총 96개소)

※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-719호 참고 /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요망

	지역	기관명	주소	대표연락처
1	서울 (32)	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	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	1588-1511
2		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	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	1811-7755
3		강동경희대학교병원	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	1577-5800
4		강북삼성병원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	1599-8114
5		고려대학교 구로병원	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	02-2626-1114
6		고려대학교 안암병원	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	1577-0083
7		국립중앙의료원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	02-2260-7114
8		삼성서울병원	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	02-3410-2114
9		서울대학교병원	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	1588-5700
10		서울아산병원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	1688-7575
11		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	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	02-870-2114
12		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	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	02-2276-7000
13		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	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	02-709-9114
14		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	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	1599-6114
15		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-1	1599-1004
16		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	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	1666-5000
17		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	02-950-1114
18		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	02-829-5114
19		H+양지병원	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	1877-8875
20		경희의료원(경희대학교병원)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	02-958-8114
21		중앙대학교병원	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2	1800-1114
22	경기도	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	서울특별시 강동구 상내길150	1588-4100
23		한양대학교병원	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-1	02-2290-8114
24		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	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08(쌍문동)	02-901-3114
25		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10	1661-7575
26		중앙보훈병원	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항도로61길 53	1800-3100
27		노원을지대학교병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	1899-0001
28		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	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	02-970-2114
29		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	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	1522-7000
30		건국대학교병원	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-1	02-1588-1533
31		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	02-3468-3000
32	서울서북병원	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	02-3156-3000	
33	경기 (20)	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	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	1661-7500
34		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	1577-7516
35		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	1577-0013
36		명지병원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(화정동)	031-810-5114

	지역	기관명	주소	대표연락처	
37	경기도	분당서울대학교병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	1588-3369	
38		분당치병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59	1577-4488	
39		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	경기도 부천시 조미루로170	1899-5700	
40		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	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	1522-2500	
41		동국대학교 일산(불교)병원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	1577-7000	
42		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	1577-8588	
43		아주대학교병원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	1688-6114	
44		한림대학교 (평촌)성심병원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	031-380-1500	
45		한양대학교구리병원	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	1644-9118	
46		국군수도병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	1688-9151	
47		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	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	1577-0675	
48		분당제생병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	031-779-0114	
49		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 주화로 170	031-910-7114	
50		국립암센터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	031-920-0114	
51		원광대산본병원	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	031-390-2300	
52		동수원병원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	031-210-0114	
53		부산 (6)	부산대학교병원	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	051-240-7000
54			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	부산광역시부산진구 복지로 75	051-890-6114
55			동아대학교병원	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	051-240-2000
56			좋은강안병원	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(남천동)	051-625-0900
57	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	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	051-797-0100	
58	고신대학교 복음병원		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	051-990-6114	
59	대구 (6)	경북대학교병원	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	1666-0114	
60		계명대학교 동산병원	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	1577-6622	
61		영남대학교병원	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	1522-3114	
62		칠곡경북대학교병원	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	053-200-2114	
63		대구파티마병원	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	1688-7770	
64		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	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	1688-0077	
65	인천 (4)	길의료재단길병원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(구월동)	1577-2299	
66		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	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	1600-8291	
67		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	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	1544-9004	
68		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	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	032-890-2114	
69	광주 (3)	전남대학교병원	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	1899-0000	
70		조선대학교병원	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	062-220-3114	
71		광주기독병원	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	062-650-5000	
72	대전 (4)	충남대학교병원	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	1599-7123	
73		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	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	1577-0888	
74		대전을지대학교병원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	042-611-3000	
75		건양대학교병원	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	1577-3330	

	지역	기관명	주소	대표연락처
76	울산	울산대학교병원	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	052-250-7000
77		(2) 울산동강병원	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239	052-241-1114
78	강원	강릉아산병원	강원도 강릉시 시천면 방동길38	033-610-4111
79		강원대학교병원	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	033-258-2000
80		(4)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	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	033-240-5000
81		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	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	033-741-0114
82	충북 (1)	충북대학교병원	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(개신동)	042-269-6114
83	충남	단국대의대부속병원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	1588-0063
84		(2)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	041-570-2114
85	전북	전북대학교병원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	1577-7877
86		(3) 예수병원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	063-230-8114
87		원광대학교병원	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	1577-3773
88	전남	화순전남대학교병원	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	1899-0000
89		(2) 성가톨릭병원	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	061-720-2000
90	경남	양산부산대학교병원	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	1577-7512
91		경상대학교병원	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	055-750-8000
92		삼성창원병원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	055-233-8899
93		창원경상대학교병원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자로 11	055-214-1000
94		창원피티마병원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	055-270-1000
95	제주	제주대학교병원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3길15 (아라일동)	064-717-1114
96		(2) 제주한라병원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	064-740-5000